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12
----------	-----

제출년월일: 2024. 8.
제출자: 평창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4차 변경계획은

- 가) 토지 취득(변경) : 2건, 9필지, $\Delta 38,917\text{m}^2$, $\Delta 1,517,970$ 천원
 - 1) 계촌 웰컴센터 부지 취득: 1건, 6필지, $1,254\text{m}^2$, 260,720천원
 - 2)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부지 매입 취소(2021): 1건, 3필지, $\Delta 40,171\text{m}^2$, $\Delta 1,778,690$ 천원
- 나) 건물 취득 : 2건, 2동, $1,245\text{m}^2$, 3,456,952천원
 - 1) 계촌 웰컴센터 건축물 취득: 1동, 622.25m^2 , 456,952천원
 - 2)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1동, 622.75m^2 , 3,000,000천원

3. 붙임자료

- 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4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가]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합계	토지	8	31,445	6,023,688	10	△7,472	4,505,718	2	△38,917	△1,517,970	
	건물	9	11,682.7	42,038,731	11	12,967.7	45,495,683	2	1,285	3,456,952	
	기타										
취 득	매 입	토지	7	30,764	5,705,768	9	△8,153	4,187,798	2	△38,917	△1,517,970
		건물	9	11,682.7	42,038,731	11	12,927.7	45,495,683	2	1,245	3,456,952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1	681	317,920	1	681	317,920			
		건물									
		기타									
합계	토지	1	445,987	6,233,483	1	445,987	6,233,483				
	건물										
	기타										
처 분	매 각	토지	1	445,987	6,233,483	1	445,987	6,233,483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붙임 나]

2024년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합계(2건, 9필지)			△38,917	△1,517,970			
소계 1건, 6필지			1,254	260,720	2024		
1	대	방림면 계촌리 1455-3	114	28,500	2024	계촌웰컴센터 부지 매입	전한*
2	대	방림면 계촌리 1455-15	56	14,000	2024		전한*
3	답	방림면 계촌리 1489-3	30	5,400	2024		전한*
4	대	방림면 계촌리 1492	141	35,250	2024		전한*
5	대	방림면 계촌리 1493-6	189	47,250	2024		원계*
6	답	방림면 계촌리 1520-34	724	130,320	2024		전한*
소계 1건, 3필지			△40,171	△1,778,690			
1	임	용평면 재산리 1447-1	△3,306	△165,300	2021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부지 매입 (사업취소)	정길*
2	임	용평면 재산리 1224-1	△30,522	△915,660	2021		최선*
3	전	용평면 재산리 1451-65	△6,343	△697,730	2021		김상*
건물취득 합계(2건, 2동)			1,245	3,456,952			
1	대	방림면 계촌리 1493-6	622.25	456,952	2024	계촌웰컴센터 건물 매입 (계촌장모텔)	전한*
2	학	봉평면 창동리 396-3	622.75	3,000,000	2024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평창군

[붙임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관광정책과	6
2.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재산 매입 (취소 및 목적변경)	경제과	10
3.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농산물 유통과	16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공모사업에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 클래식 예술마을의 랜드마크로 계촌 웰컴센터를 조성하고자 구)계촌장 모텔 건물과 부지(6필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493-6번지 외 5필지
- 사업량
 - 건물 취득: 방림면 계촌리 1493-6번지 (구)계촌장 모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22.25㎡)
 - 토지 취득: 방림면 계촌리 1493-6번지 외 5필지 1,254㎡
- 사업비: 800백만원(군비 800)
- 사업기간: 2024. 8. ~ 12.

□ 추진사항

-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 신청: 2024. 5. (평창군, 케이아츠 크리에이티브 협약 및 신청→강원도→국토부)
-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확정(110억): 2024. 6.
- 국토부 주관, 공모 확정 9개 지자체 간담회 참석: 2024. 7.
- 강원도·평창군·케이아츠·면·주민 설명회(의견수렴): 2024. 7.
- 건물 및 부지 가감정 의뢰: 2024. 7. 29 (토지 6필지, 건물 1동, 1개 감정평가법인)
- 강원도·평창군·케이아츠 국토부 협의: 2024. 8. 8.

□ 검토사항(필요성)

- '계촌클래식 마을'의 인지도 확립으로 생활인구 확대 기여
 - 매년 계촌클래식 축제에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참여
 - 축제 기간에만 방문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 지속적인 클래식 프로그램(공연, 교육, 경연 등) 개발과 로컬문화 브랜딩 필요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 마을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온라인 농산물 구독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계촌클래식 축제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 시설 등 거점으로서 웰컴센터 신축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

(단위 : m², 원)

소재지	지번	용도	규모	연면적	재산가액 (가감정)	취득 시기	소유자
계				662.25	456,952,500		
방림면 계촌리	1493-6	숙박시설	지하1층, 지상3층	662.25	456,952,500	2024년 하반기	개인

○ 토지

(단위 :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공시지가	가감정		
계			2,254	1,254	169,266,100	260,720,000		
방림면 계촌리	1455-3	대	114	114	18,103,200	28,500,000	2024년 하반기	개인
방림면 계촌리	1455-15	대	56	56	8,892,800	14,000,000	2024년 하반기	개인
방림면 계촌리	1489-3	답	30	30	4,497,000	5,400,000	2024년 하반기	개인
방림면 계촌리	1492	대	141	141	22,038,300	35,250,000	2024년 하반기	개인
방림면 계촌리	1493-6	대	189	189	30,013,200	47,250,000	2024년 하반기	개인
방림면 계촌리	1520-34	답	1724	724	85,721,600	130,320,000	2024년 하반기	개인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2024. 8월
- 국토부 의견 반영 최종 협의안 작성,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2024. 8.
- 최종 사업계획서 및 협의안 국토부 제출: 2024. 9.
- 강원도 재정투자심사: 2024. 8. 26.
- 건물 및 부지 매입비(8억), 휴콘서트(2회, 3억) 2회 추경 편성: 2024. 9.
- 중앙시대위원회 심의 및 협약(국토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4. 9.
- 감정평가, 보상, 등기 이전: 2024. 10. ~ 11.
- 2024년 3회 추경 편성(27억 - 국비 15, 지방비 12): 2024. 10. ~ 12.
- 2025년 당초예산(40억 - 국비 20, 지방비 20): 2024. 10. ~ 12.
- 구)계촌장 모텔 철거: 2024. 11. ~ 2025. 4.
- 웰컴센터 건립 기획용역 발주 및 준공: 2024. 11. ~ 2025. 4.
- 웰컴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준공: 2025. 3. ~ 2025. 8.
- 2026년 당초예산(30억 - 국비 15, 지방비 15): 2025. 10. ~ 12.
-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2025. 5. ~ 2025. 10.
- 웰컴센터 건립공사 발주: 2025. 12.
- 웰컴센터 건립공사 준공: 2026. 12.
- 클래식 거리조성, 민관협력 소프트웨어 사업: 2024. 10. ~ 2026. 12.

《참고》 최종 사업계획서 국토부, 강원도, 민간 협의 중으로 9월 중 결정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道 투자유치과-2357호)” 추진을 위해 재산리 일원 토지 등을 매입하였으나(일자리경제과-21854호) 사업이 전면 취소됨.
- 매입한 재산 중 일부는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취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 일원
- 매입대상 : (토지) 용평면 재산리 1457-1 외 40필지(132,856㎡)
(건물) 용평면 재산리 1451-21 외 10개 동(4,418.33㎡)
- 매입가격 : 총 9,637,626,500원(토지) 9,637,626,500원 / (건물) 0원(기부채납)

□ 추진사항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방침 결정(道 투자유치과): ‘21. 3. 23.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구상용역” 사업비 지원계획 수립 : ‘21. 4. 8.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부지매입 계획 수립 : ‘21. 4. 21.
- 2021년도 제3회 평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1. 4. 29.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의회 의결(원안의결) : ‘21. 5. 21.
- 부지 매매계약 체결(재산 영농조합법인 외 2) : ‘21. 6. 14. ~ 15.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종합기본계획 구상 도비보조금 교부(道) : ‘21. 9. 23.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종합기본계획 구상 도비보조금 반납 고지(道) : ‘22. 10. 7.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종합기본계획 구상 도비보조금 반납(군) : ‘22. 12. 26.

□ 매입대상 재산 변경 내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내역)

○ 토지 3필지(40,171㎡) - 미취득(매입 취소)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시지가('24. 1.)	가감정액	소유자	비고
총계		40,171			1,778,690,000		지적재조사
용평면 재산리	1447-1	3,306	임	1,340	165,300,000	정길수	당초 산1191 (지번변경)
	1224-1	30,522	임	1,280	915,660,000	최선옥	당초 산1142 (지번변경)
	1451-65	6,343	전	42,900	697,730,000	김상수	

※ 매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미취득된 재산

○ 토지 6필지(11,896㎡) - 취득(사업목적 변경)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시지가('24. 1.)	취득가액	비고
총계		11,896			1,006,719,000	
용평면 재산리	산1195-3	573	임	1,370	28,363,500	산림과*
	산1195-6	4,256	임	1,350	210,672,000	산림과*
	산1195-8	970	임	1,400	49,470,000	산림과*
	1440-56	2,167	전	40,800	309,881,000	산림과*
	1440-57	791	도로	14,100	33,222,000	산림과*
	1440-58	3,139	전	39,800	375,110,500	산림과*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과로 이관('23. 3. 16.)

○ 토지 33필지(80,789.8㎡) - 취득(사업 취소 및 용도폐지)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시지가('24. 1.)	취득가액	비고
총계		80,789.8			8,630,907,500	
용평면 재산리	1457-1	2,744	전	45,000	81,260,000	
	1457-7	3,722	전	41,300	381,505,000	
	1457-8	924.4	전	41,300	94,505,000	
	1457-9	65.7	전	38,900	6,560,000	
	1457-10	921	전	45,400	94,095,000	
	1457-11	198.9	전	45,000	20,705,000	
	1285-2	3,473.9	창	118,000	848,464,500	
	1285-3	743.7	임	1,900	52,560,000	
	1283-1	229.9	창	122,900	73,737,500	
	1283-2	1,668	창	122,900	354,450,000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시지가('24. 1.)	취득가액	비고
용평면 재산리	1283-4	878.9	답	122,900	142,500,000	
	1443	422.5	전	64,100	46,500,000	
	1443-1	3,101	공장	81,300	600,305,000	
	1448	4,191.5	대	60,900	655,656,500	
	1449	3,782.2	전	38,100	218,497,500	
	1450	760.1	전	37,400	42,510,000	
	1450-1	2,608.2	전	37,400	251,062,500	
	1451	2,136.3	전	38,600	360,067,500	
	1452	268	대	46,600	30,284,000	
	1453	933.6	전	40,900	80,535,000	
	1442	5,214.9	전	52,000	748,534,000	분할** (-2, -3)
	1442-2	510	전	53,900		
	1442-3	246.7	전	18,800		
	1445	1,361.4	전	51,600	162,750,000	
	1446	264	대	57,300	34,848,000	
	1447	1,042	전	47,900	129,105,000	
	1451-85	11,731	임	1,250	469,240,000	
	1451-86	11,635	전	37,100	1,082,055,000	
	산1210-2	965	임	1,650	41,012,500	
	1451-21	9,348	목장	1,480	1,224,588,000	
1451-22	624	목장	1,550	87,672,000		
산1195-4	3,903	임	1,360	193,198,500		
1427-36	171	대	48,000	22,144,500		

※ 상기 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 및 회계과 이관('24. 5. 16.)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분할

○ 건물 11개 동(4,418.33㎡) - 취득(사업 취소)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연면적(㎡)	용도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비고
총계		4,418.33		247,888,720	-	
용평면 재산리	1443-1	990	공장	117,810,000	-	기부채납
	1285-2	190.08	농산물판매장	5,987,520	-	기부채납
	1285-2	753.25	농산물저온창고	12,052,000	-	기부채납
	1283-1 외 1필지	780	농산물포장창고	38,220,000	-	기부채납
	1451-21 외 1필지	1,705	목장	73,819,200	-	기부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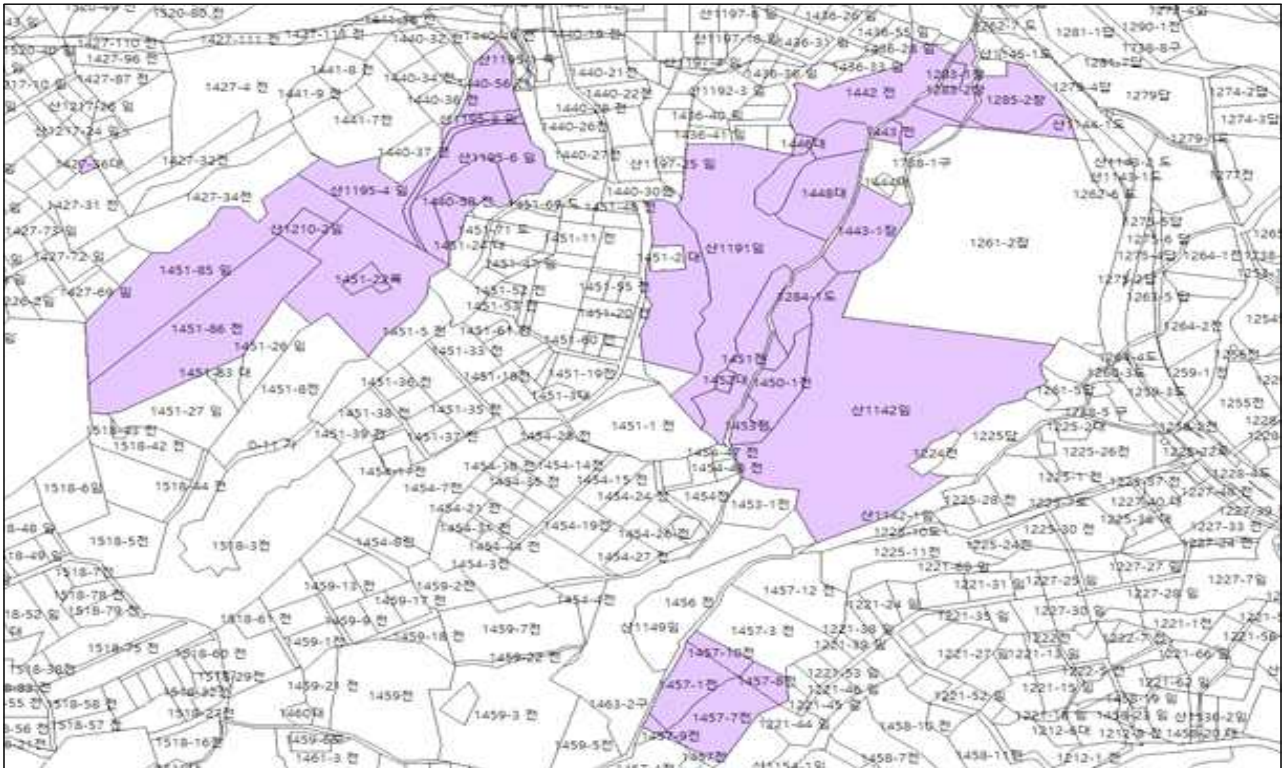
□ 변경사항

- 토지(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 외 40필지) 및 건물(11개 동)에 대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소 및 목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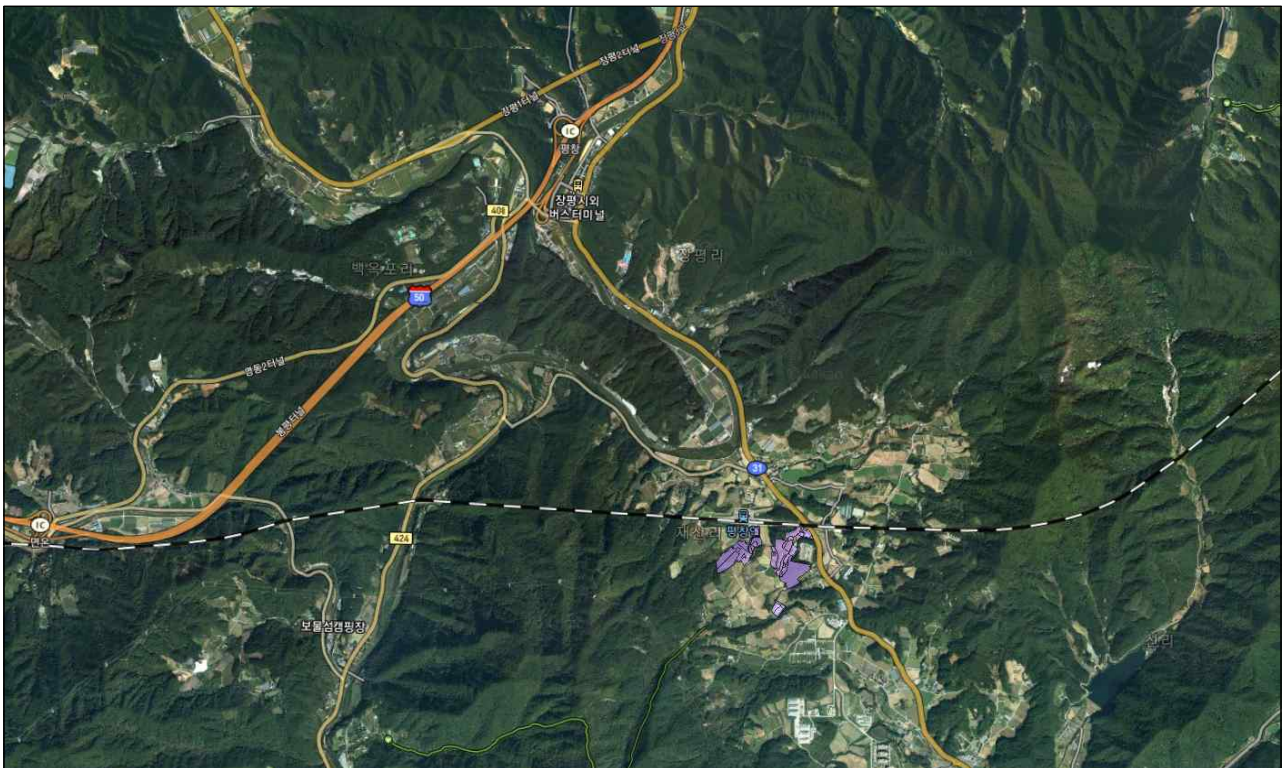
□ 변경사유

- 당초 계획상 토지 40필지 및 건물 11개 동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중 일부(3필지)의 경우 매매협약이 불가하여 매입하지 못하였음.
- 또한, 기 매입한 부지 중 일부는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과로 이관(‘23. 3. 16.)된 상황이며,
-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이 참여기업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당초 구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며 별도 추진계획이 없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취소 및 목적변경)하고자 함.

□ 지적도



□ 위치도



□ 항공사진



-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으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된 안정적인 생산·공급·소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1,813m²
- 사업량: 지상 2층 1개동, 연면적 622.75m²
 -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343.86m²
 -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회의실 등) 278.89m²
- 사업비: 3,000백만원(군비 3,000)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 사업기간: 2024. 3월 ~ 2025. 12월(2년차 사업)

□ 추진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평창푸드 행복센터 반영 협의: 2022. 5.
- '22~'26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종합계획: 2022. 9. 14.
- 평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2022년 제4차): 2022. 12. 5.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예산 배정: 2024. 01.

□ 검토사항(필요성)

- 평창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구축으로 연중 안정적 생산·공급·소비 기반 마련 및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
- 평창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운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력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축)

위 치	건물명	연면적(m ²)	주요시설	사업비(천원)	비고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3 (1,813m ²)	로컬푸드 직매장 (봉평면)	≒ 623m ²	소매점 199.05m ² , 업무공간 36.45m ² , 휴게음식점 105.73 회의실 104.40m ² 저온저장시설 27m ² 공용공간 150.12m ²	3,000,000	

※ 공용공간 : 계단실, 복도, 화장실, 승강기, 방풍실 등

[건축계획(안)]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3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 7,483 m ² / 실사용면적 : 1,813m ²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용도	층 별	용 도	면 적(m ²)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등)	343.86
	지상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회의실 등)	278.89
	합 계		622.75
연 면 적	622.75m ²		
건축면적	398.56m ²		
용 적 륜	622.75 ÷ 1,813.00 × 100 = 34.35%	법정 : 250% 이하	
건 폐 율	398.56 ÷ 1,813.00 × 100 = 21.98%	법정 : 60% 이하	
건물규모	지상2층 1동		
주차대수	총 5대 계획 (일반형 4대 / 장애인 1대)	법정 주차대수 : 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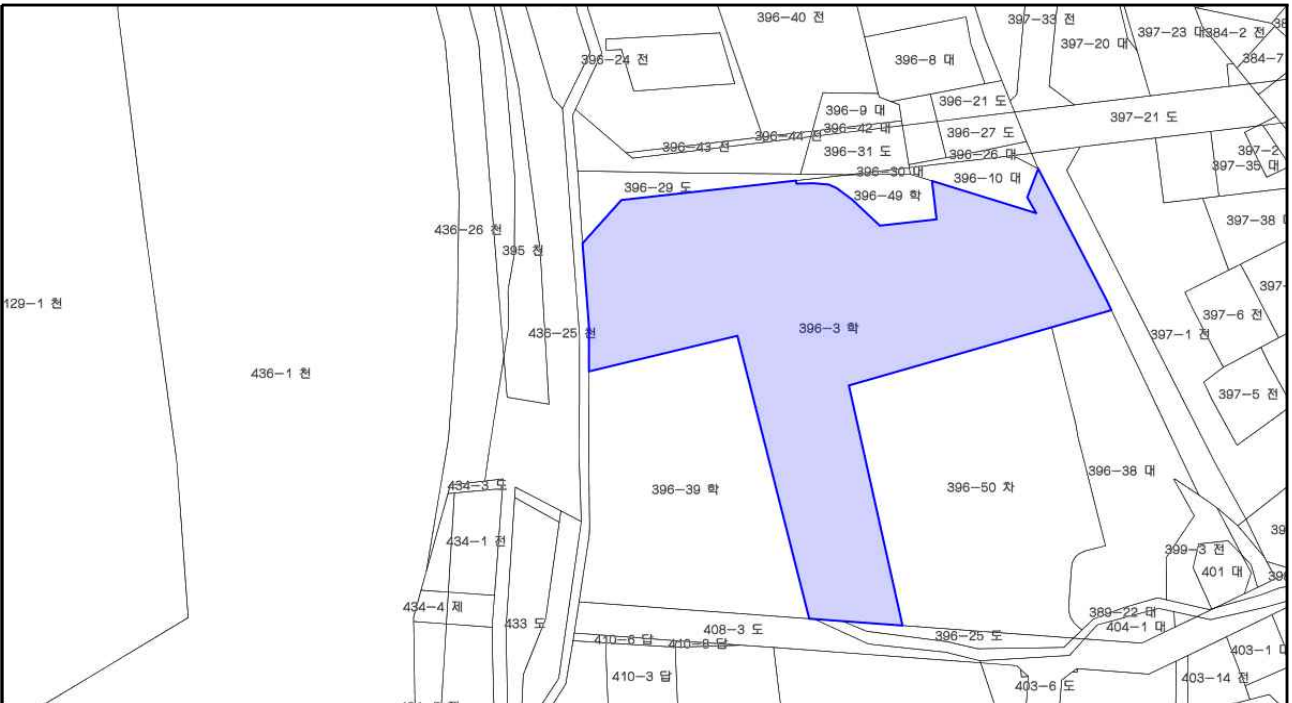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24.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 7. ~ 10.
-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2024. 11. ~ 2025. 10.
-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025. 12.

위치도 / 지적도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 용	위치도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 용	지적도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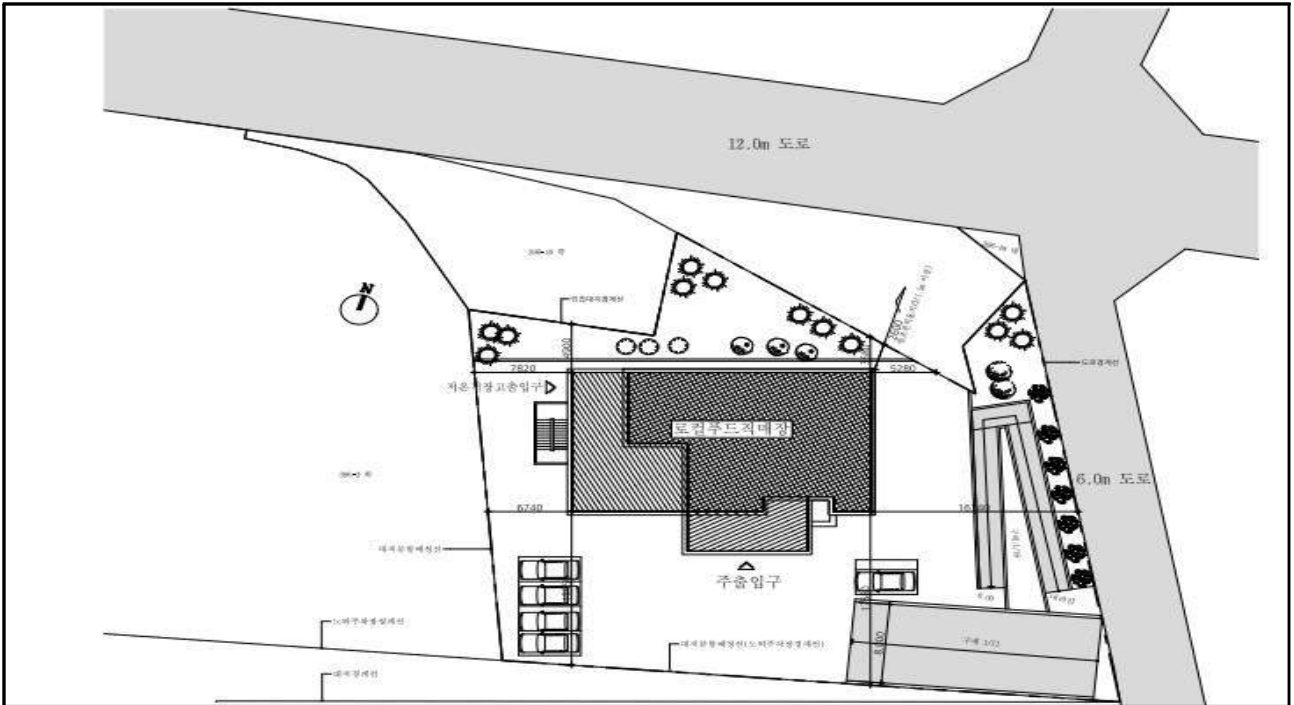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용	사업예정지(남측 → 북측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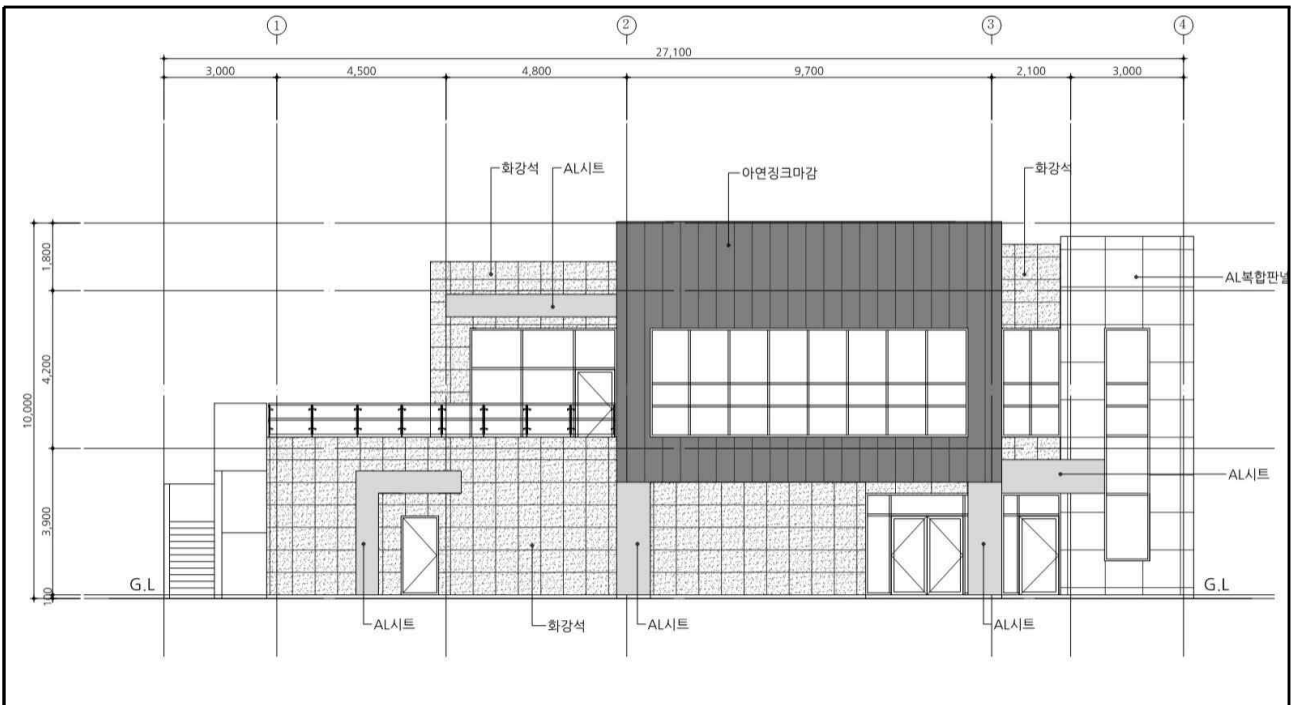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용	사업예정지(서측 → 동측 방향)

배치도(안) / 정면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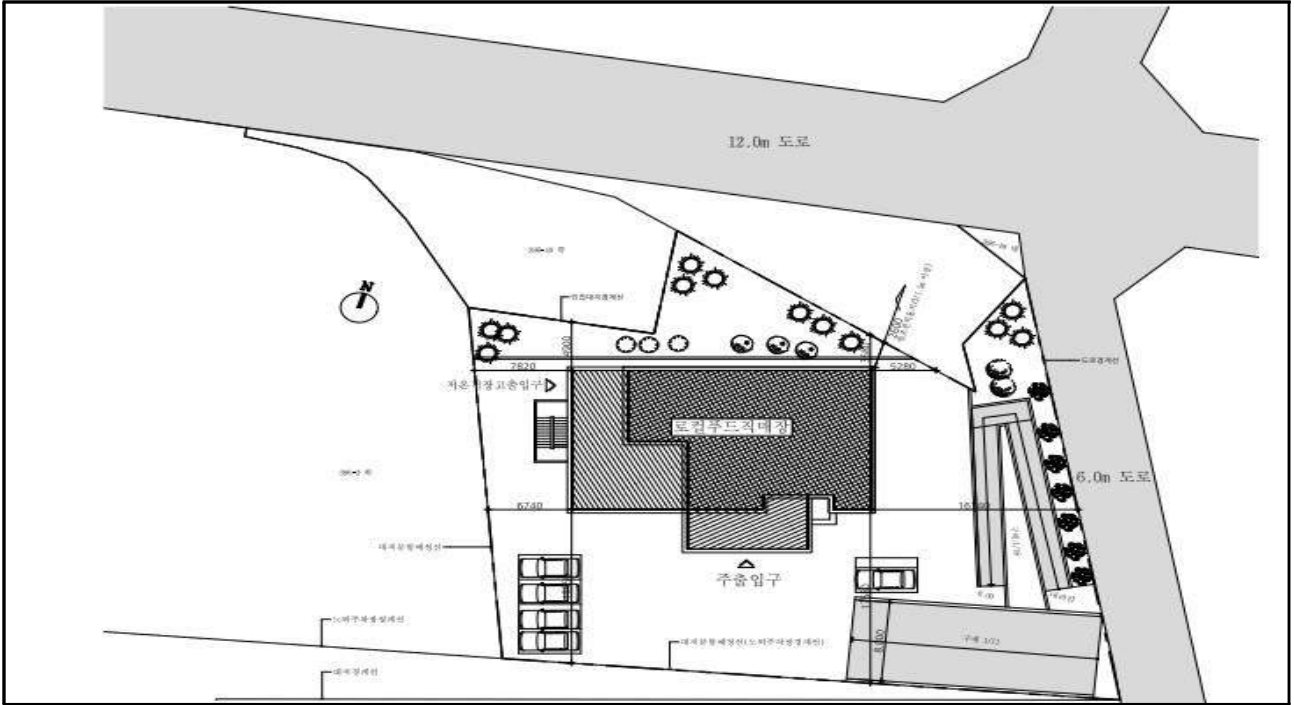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용	정면도(실시설계 등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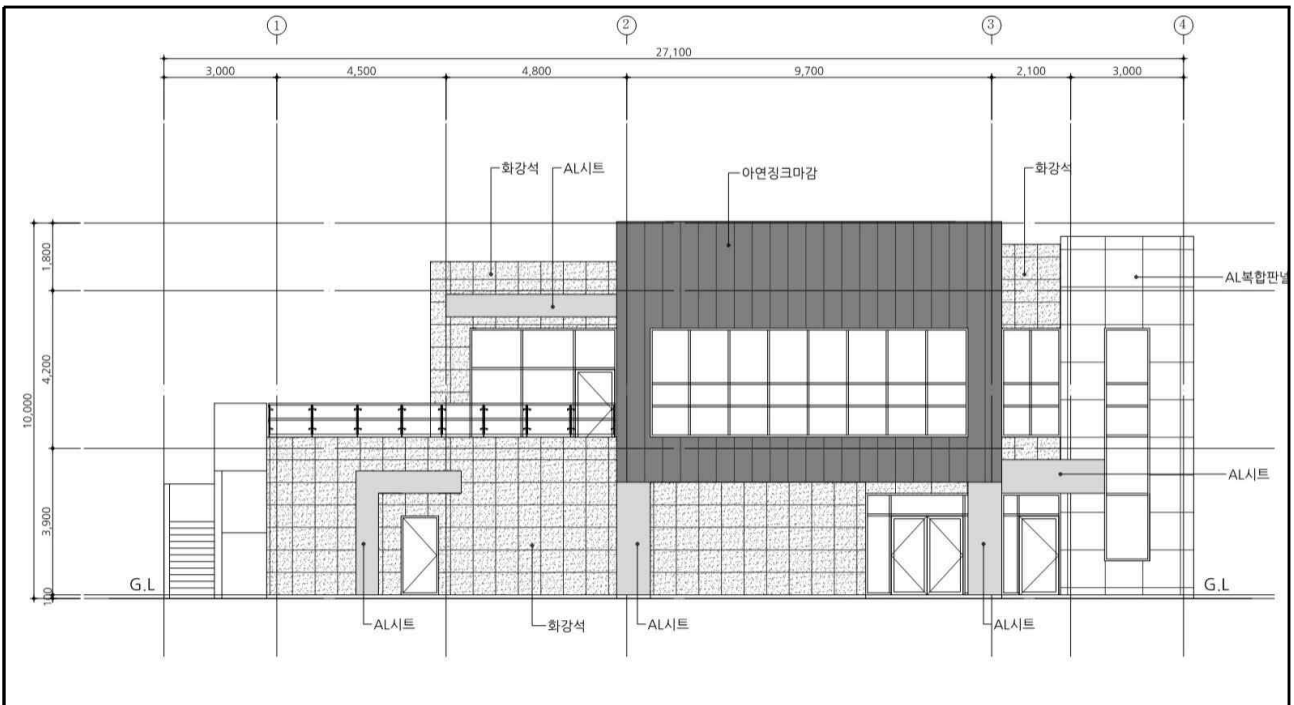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용	정면도(실시설계 등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배치도(안) / 정면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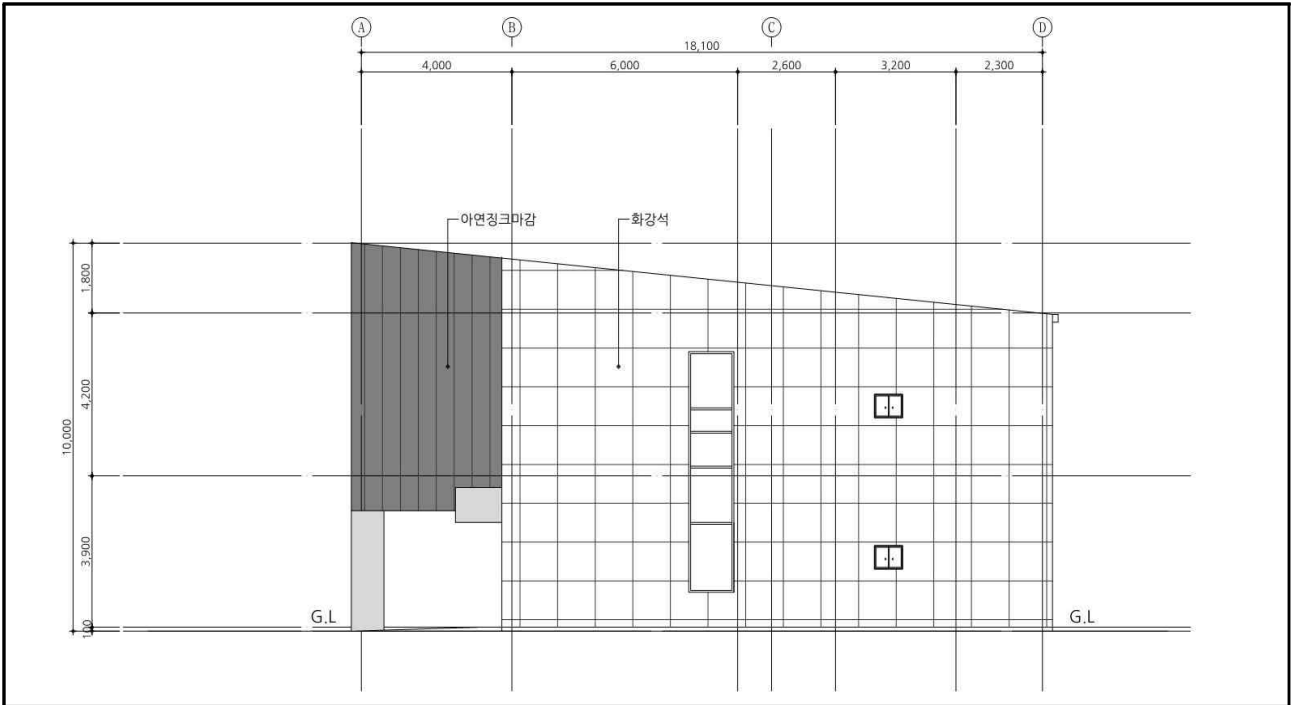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 용	정면도(실시설계 등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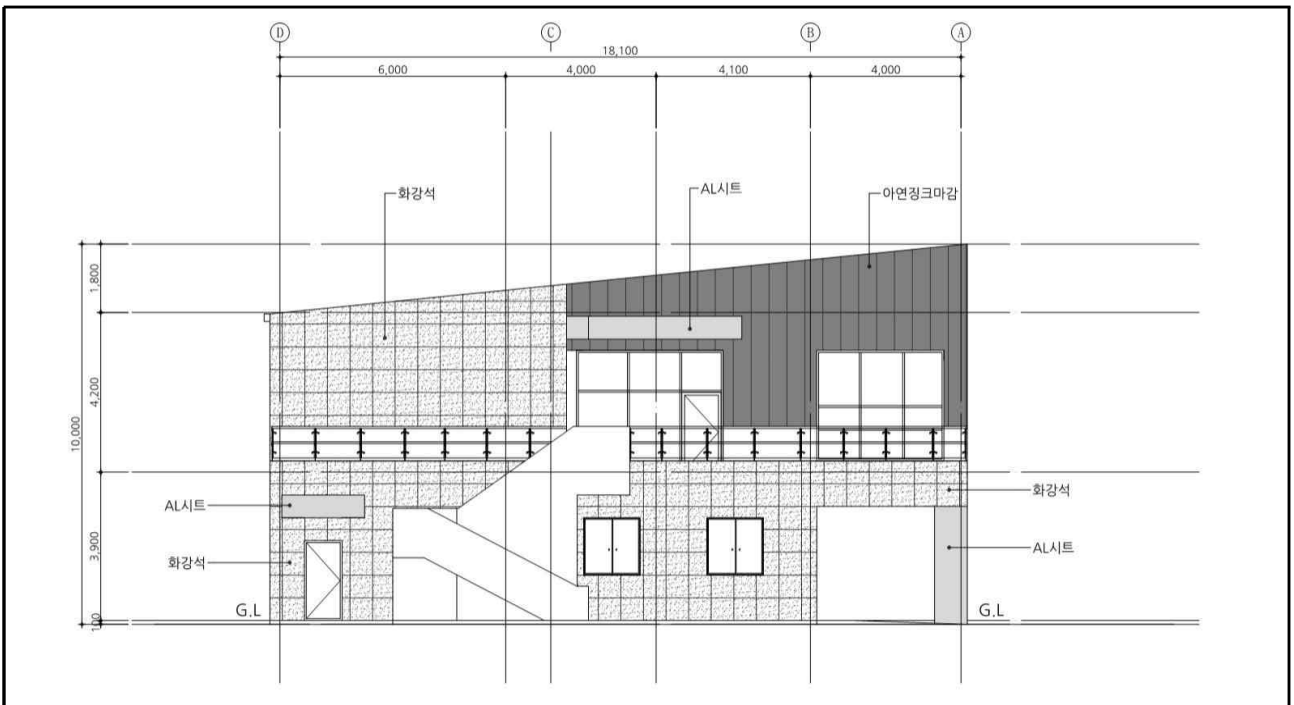
사업명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 용	정면도(실시설계 등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측면도(안)



사업명 |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 용 | 우측면도(실시설계 등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명 |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내 용 | 좌측면도(실시설계 등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